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Identification’ System i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문 흥 안**
Moon, Heung-Ah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
| II. 본인확인제도의 운영 | V. 결론 |
| III. 본인확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록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의 존재나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II.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III.에서는,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 ‘사실’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 대신 사자(使者)에 의해 신고서

<https://doi.org/10.35148/ilsilr.2020..46.131>

투고일: 2020. 5. 24. / 심사의뢰일: 2020. 5. 28. / 게재확정일: 2020. 6. 12.

* 이 논문은 2017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논문은 2017년 대법원 용역보고서 『등기·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발주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필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둔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

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NS 등으로 통지하고, 신고서의 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출석 사건 본인에게는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증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에서는,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을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에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익과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극히 형식적인 혼인신고제도를 개편하여, 혼인이 법률행위인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는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본인확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 온라인출생신고, 출생통보, 사망신고, 사망통보, 혼인의사확인, 혼인신고, 인우인보증제도, 인감증명

I. 서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¹⁾

국가의 성립에는 내가(국민) 있어야 하고, 사람(국민)을 기준으로 국가는 현재와 미래 사회의 변화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한다. 국민은 원칙적으로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을 통하여 변동하며, 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에의 등록을 기반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의 등록은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²⁾ 이렇게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은 인구변화를 촉발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모든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사명으로³⁾ 하면서,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이후 혼인, 입양,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추가로 입력·축적되면서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특성이 있다.⁴⁾

그 결과 인구변화를 촉발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출생과 사망 혹은 혼인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한 정확한 등록이 요구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와 자식이나 부부 관계 등의 신분관계가 입력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본인확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원인으로써 신고 등에 의한 경우(동법 제16조)와 직권에 의한 경우(동법 제38조 및 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⁵⁾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이고 원칙적인 사유로, 대부분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⁶⁾

1)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왕’에 나오는 대사

2)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추정력은 종래 호적제도 하에서 호적기재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1다카296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대법원 1960. 9. 8. 선고 4293민상116 판결 등 참조.

3)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Ⅰ), 2012, 4쪽.

4) 문흥안,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4., 315-316쪽.

5) 직권에 의한 등록은 본 연구와 연관성이 없어 논의를 생략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는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가 있고⁷⁾ 그것이 보고적 신고이든 창설적 신고이든 지향하는 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신속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현실의 법률관계와 일치시키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사건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등록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⁸⁾ 하지만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통설의 입장)만을 갖고 있어, 접수된 신고서 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 및 신고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의 존재나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가장혼인이나 허위신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⁹⁾ 이 논문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인확인제도의 운영

1. 본인확인의 수단

1.1 출석자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원칙적인 본인확인 방식은 출석한 신고인을

6) 법원행정처, 앞의 책, 243쪽.

7) 이 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창설, 실종신고 및 개명과 같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서 하는 신고도 있는데, 이 경우도 본 연구와 연관성이 없어서 논의를 생략한다. 법원행정처, 위의 책, 246쪽 참조.

8) 문홍안, “호적의 기능과 사생활비밀의 보호”, 현대민법의 전개(서영배박사화갑기념논문집),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579쪽.

9)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세창출판사, 2012, 133쪽;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800 판결 등.

대면하여 당사자가 제시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이나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신분증명서에 의한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선례’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동 규칙, 동 예규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기타의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예규에서 인정된 신분증명서는 모두 국가(내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이를 갈음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 증명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유공자증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이므로 신분증명서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¹⁰⁾

1.2 불출석자 및 우편신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사건본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해 사건본인임을 확인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인 및 우편으로 사건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불출석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해 불출석 본인임을 확인한다. 사건본인이 불출석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우편으로 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로 사건본인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신분증명서에 의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진다.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601-1호(2016.1.8.)] 가족관계등록과-93 질의회답;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만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증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증은 첫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동일인 증명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국가유공자증의 신청과 교부에 있어서 신청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당사자의 신분사항 및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발급한다는 점, 셋째, 국가유공자증이 「공직선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이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신분관계 확인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가족관계 등록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본다.

1.2.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을 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우선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¹¹⁾ 하는 절차이다.

인감증명서에 의한 증명방식은 2003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직접증명방식, 그 이후에는 간접증명방식에 의하고 있다. 직접증명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을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지참한 인감과 등록된 인감의 인영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와 달리 간접증명방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인감(인영)을 복사·교부하여 등록된 인감(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각종 신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인영)을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인영)과 대비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하게 된다.

판례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의 발급절차 또는 그 기능에 종전과 다른 어떤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는¹²⁾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본인확인 관련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고 국민적 친숙성에 있어 널리 공감을 얻고 있어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1.2.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체 방안으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가 도입되었다.¹³⁾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1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 등.

1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제출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처리지침'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법, 동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고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동 처리지침 제2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매도용 이외에는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사용용도를 분명히 하였다(예: 000와 000의 혼인신고용, 000에 대한 입양신고용, 000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 당연하지만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않으므로(처리지침 제5조), 인감증명서 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3 신분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우편으로 하거나(보고적 신고)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본인의 확인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로 하게 된다. 그런데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신고의사가 중요한데 신분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복제 내지 위·변조로부터 신분증명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진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

2.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은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신고인의 특정한 신고를 접수·수리한다. 여기서 등록공무원은 신고의무자, 신고적격자의 신고가 아니면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확인은 신고적격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의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일정한 신분행위를 하려는 자의 신고로 신분관계가 창설된다. 등록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상 당사자인 본인을 확인하거나 제출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등록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III. 본인확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본인확인과 본인의사의 확인

1.1 본인확인에서의 문제점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확인’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지참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¹⁴⁾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확인 방법은 신고인 또는 제출인에게 얼굴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제운전면허증·전자카드식 공무원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의 제시에 의한다. 신고인 또는 제출인에 의해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때에는 신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확인되면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얼굴사진의 인물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한다.

본인확인에 있어서는 신분증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바, 사진은 과거의 특정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현재의 모습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 된다. 지문도 일정한 시점에 채취한 이후 일부 마모 등 손상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중복번호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위조·변조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해 허위신고가 시도되는 경우 접수여부에 관한 문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문제 등도 분명한 처리방침이 필요하다.

14) 신고인의 사자(使者)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본인의사확인 문제점

1.2.1 보고적 신고의 경우

신고는 서면이나 말(구술)로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1항). 서면에 의한 신고의 경우 신고서에 신고사건, 신고의 연월일,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고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 후(동법 제25조 제1항)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고서는 우편이나 사자(使者)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는데,¹⁵⁾ 이 경우 시(市)·읍·면·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첨부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되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신고인의 진의에 의해 신분증명서 사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신분증명서 사본은 신고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고인의 자격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2.2 창설적 신고의 경우

창설적 신고는 사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¹⁶⁾ 면전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를 접수·수리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신고요건에 흠결이 없는지 여부만 심사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의 진의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사건본인들 중 한쪽만이 출석하였거나, 제출인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규칙(제32조 이하) 및 가족관계등록예규(제443호)에서는, 사건본인들 중 한쪽만이 출석하여 불출석 본인이 신고서 상의 당사자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제출인이 출석하여 불출석 본인들이 신고서 상의 당사자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건본인들은 신고서상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¹⁷⁾ 혹은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¹⁸⁾ 서명공증서가 제출되는

15)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일부개정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 시행 2015.2.1)

16) 해외에서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재외공관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는 재외공관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7) 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한다)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한다)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서명공증),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앞의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의 확인방법’

18)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 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본인의사가 명료하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신분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1.2.2.1 인감증명서에 의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확인의 문제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접수 시 신고인 등의 확인방법에 대하여¹⁹⁾ ① 사건본인들 중 한쪽만이 출석하여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 한 사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② 사건본인들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받아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③ 사건본인들이 신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날인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등록관서에서는 시(구)·읍·면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신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일치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게 된다. 인감이 날인된 신고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불출석 당사자의 신고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판례도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²⁰⁾

그런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그 용도 등을 기재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외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등 창설적 신고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²¹⁾ 그 결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 가족관계의 창설을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19) 앞의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의 확인방법’

2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21) 대법원 2016년 사법연감 ‘제5장 통계’ 제1절, 제10항, 2. 등기사항증명서 및 열람 등 현황(표134), 594쪽에 의하면, 2015년 인감증명 발급건수는 총4,469,519건에 발급은 17,808,750통으로 1건당 약3.98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여분의 인감증명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원래의 발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http://www.scourt.go.kr/img/pub/jur_2016_Book6.pdf>, 검색일: 2016. 12.10.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면 신고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이는 인감증명제도의 개편 취지에 반한다.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다면, 인감증명서 상에 바코드 생성 또는 인감증명서 상의 발급번호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의사의 진정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2.2.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의한 본인확인

‘처리지침’(II. 1. 1.2.2)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신고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처리지침 제2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시(구)·읍·면·동의 장 등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매도용 이외에는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아니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사용용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은 인감증명서에 의한 경우보다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의한 본인확인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정도의 안정적이고 국민적 친숙성이 있는 대체방안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활용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1.2.2.3 신분증명서에 의한 사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확인 문제

창설적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본인의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본인들 중 한쪽만이 출석하여 신고하거나 제출인이 신고하더라도 본인의사의 확인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면전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석한 당사자로부터 불출석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고서 상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의 진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분증명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향후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불출석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건본인 이외의 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우편이나 SNS 등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의 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건본인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3 소결

구분	신고서 제출 방법	본인 출석 여부	서명 또는 날인 방법	신분증명서 제시 및 첨부서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고적 신고	출석		서명, 날인	- 출석자 신분증명서(출생·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	
	우편		서명, 날인	-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	○신분증명서 사본제출
창설적 신고	출석	양쪽 출석	서명	출석자 신분증명서	
			날인	출석자 신분증명서	
		한쪽 출석	서명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 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불요)	○불출석자 신분증명서제출
			날인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 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요)	○불출석자 신분증명서제출 △인감증명서 제출
		양쪽 불출석, 제출인 출석	서명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제출
			날인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제출 △인감증명서 제출
	우편		서명	서명공증서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출

IV.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 출생신고에 있어서 본인의 확인

1.1 출생사실과 출생신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출생신고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 시기(始期)를 등록하는 것이고, 친자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의미를 가진다.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고, 이 등록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적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²²⁾ 이렇게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시민권 및 아동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²³⁾ 하지만 출생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그 취약함과 미성숙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²⁴⁾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의한 출산은 영아 살해, 유기, 방임, 매매, 학대 및 불법입양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출생아동의 권리는 최소한 국가에 인지되는 것을 전제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므로,²⁵⁾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1차적으로 혼인중 출생아동은 ‘부’ 또는 ‘모’에게, 혼인외의 출생아동의 경우에는 ‘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게(동조 제3항), 3차적으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동조 제4항). 한편 출생신고에는 의사, 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도록 하였다(동법 제44조의2). 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출생아동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22) 신영호,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 2009, 92쪽.

23)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족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11. 483쪽.

24)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3, 23쪽.

25)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9. 5. 162쪽.

있다(동법 제57조). 그러나 국가 등 제3자가 모든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출생아동의 출생등록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부모의 출생신고와 병행하여 의료기관 등에도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대법원과 법무부에 권고하였으나, 아직 입법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오늘날 신생아의 대다수는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병원에서 출생한 비율은 99.49%에 달하고 있고,²⁶⁾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에서 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연도	총계	병원	자택	기타	미상	병원출생비율
2014	435,435	430,705	2,912	1,501	317	98.91%
2015	438,420	434,482	2,478	1,171	289	99.10%
2016	406,243	402,995	1,802	1,234	212	99.20%
2017	357,771	356,070	913	626	162	99.52%
2018	326,822	325,162	975	467	218	99.49%

출산에 관련한 의사, 조산사나 그밖에 분만에 관련한 사람이 작성하여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는 ① 자녀의 성명(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성별 ②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③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④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⑤ 작성연월일 ⑥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 출생증명서 작성에 있어서 의사나 조산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 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에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였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도 된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2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20.5.18.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동 예규 제501호). 한편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²⁷⁾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²⁸⁾ 제출도 인정된다(동 예규 제501호).

다른 한편 출생신고시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종래에는 분만에 관여한 자나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의 인우보증에 의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우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우보증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 대신 2016. 11. 30. 부터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0호, 이하 ‘사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이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²⁹⁾ 가정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2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

27) 이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대법원규칙 제2697, 2016. 11. 29).

28) 이 서면에는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있다(대법원규칙 제2697, 2016. 11. 29).

29)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국내통계-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A#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20.5.9.

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4항) 엄격한 출생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증명서 작성자	출생증명서 양식	
	종전	현행(2016. 11. 이후)
의사·조산사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	<좌동>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	인우보증서 양식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 +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	인우보증서 양식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대다수의 가정에서 자녀의 출산은 축복이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왜곡시키거나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의 출생신고는 종래 입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거나 혼외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였으나, 2012년 개정 민법이 미성년자 입양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민법 제867조) 미성년양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혼인외 자 및 ‘모’ 미상인 상태로 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³⁰⁾ 이러한 현실에서 혼인외 자나 ‘모’ 미상인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출생신고가 있을 수 있다. 출생신고가 아동인권보호의 첫 단계이므로, 출생자의 누락 없이 사실과 일치하는 출생신고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혼인상태별 출생현황

(단위: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혼인중의 자	426,423	426,323	429,992	398,243	350,646	319,462
혼인외의 자	9,332	8,459	8,152	7,781	6,951	7,166
‘모’ 미상	700	653	276	219	174	194

30)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혼인상태별 출생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검색일: 2020.5.19.에 의하면 2018년 현재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2 출생정보의 전송과 온라인 출생신고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행정자치부가 2017년 상반기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5월 8일 08시부터 부모가 일정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했던 출생신고 방식보다 진일보한 방안으로 향후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이다.³¹⁾ 현재 출생정보 송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³²⁾ 의료기관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생아 부모의 동의하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것이다.³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계되고,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병원과 신생아 부모 양측의 정보를 대조 확인 후 출생신고가 처리되는 구조이다. 즉, 신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파일로 송부하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송부된 정보와 부모가 제출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생아의 출생사실의 정확성 뿐 아니라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신생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³⁴⁾ 출생신고의 지연 및 누락방지, 신생아 매매 및 불법·탈법적인 입양 방지, 영아출생 및 사망의 정확한 집계 등 영·유아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산모의 출생증명정보의 전송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산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국가는 신생아동의 출생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1) 소라미, 앞의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487쪽.

32) 정부24,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확대 안내, <<https://www.gov.kr/portal/ntcltm/54619>>, 검색일: 2020.5.19.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은 전국적으로 107개 병원에 불과하다.

33)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도 의료기관들은 신생아가 병원에서 출생되는 경우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산모와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고 있었다. 다만 그 정보가 보험금청구를 위한 용도로 한정되었을 뿐이다.

34)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 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76-77쪽.

1.3 출생통지제도의 도입 가능성

혼인 외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로 모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를 유기하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³⁵⁾ 이 경우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길이 없어 심각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³⁶⁾ 이러한 이유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또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아를 보호하고자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 그동안 부모에게 맡겨졌던³⁷⁾ 출생신고 절차에 공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찰이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출생신고의 진실성을 확보하면서도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신생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첫째, 2018년부터 일부 의료기관과 산모의 협력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생정보의 전송과 온라인 출생신고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출생사실을 숨기려는 산모로부터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다.

외국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독일의 경우에 출생신고제도는 독일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 PStG) 제19조에 의한 부모 등에 의한 구두에 의한 신고와 동법 제20조에 의한 병원이나 그 밖의 출산을 보조하는 시설의 주체에 의한 서면에 의한 신고 등 이원적 체계로 병행하여³⁸⁾ 이루어지고 있다. 구두신고는 가정출산

35) 소위 베이비박스에서 출생아를 유기하는 문제로, 출생신고의 요구와 유기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의 신원의 비밀을 보장하는 익명출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모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것은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아동권리협약 §7)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206쪽.

36) 아동으로서의 필수예방접종 서비스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등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37)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부모 혹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참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경우에만 부모 등이 직접 신분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구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는 양육권이 있는 부모 일방이 1차적 의무자이고,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 현장에 있었거나 출산 사실을 알게 된 자가 2차적 출생신고 의무자가 된다. 출생신고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출산요양사가 작성한 출산확인서도 첨부하여야 한다.³⁹⁾ 서면신고 의무자는 기관이나 시설의 주체로 조직형태에 따라 공공단체, 법인 등으로 신분등록사무소에 확실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만한 행정조직구조를 보유한 단체이다. 병원 등 시설에서 출산을 한 경우 부모 등이 구두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병원 등 시설의 서면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⁴⁰⁾

캐나다는 각 주정부마다 인구동태통계법(Vital Statistics Act)에 따라 출생아동들을 주 정부에 등록한다.⁴¹⁾ 출생아동의 등록은 병원의 의료진이나 조산사가 하는 출생통보(Notices of Birth)와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로 이루어진다. 각 주에 따라 의료진이나 조산사와 부모가 서류를 작성한 후 병원에서 일괄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류를 각각의 작성자가 각 주의 신분등록사무소에 하게 된다. 출생증명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로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서를 서류나 온라인으로 신분등록사무소에 제출한다. 이후 각 주의 인구동태통계청은 출생통보와 출생신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출생통보와 출생신고가 일치해야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⁴²⁾ 의료기관이나 조산사의 도움없이 아동을 출생한 경우는 인구동태통계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아 부모가 출생통지와 출생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출생통보서에는 출생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출생통보는 출생아동의 출생의 사실만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국가에 알리고 다른 정보는 부모의 출생신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⁴³⁾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영아가 병원 등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

38) 한명진,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300쪽.

39) 한명진, 위의 논문, 288쪽.

40) 한명진, 위의 논문, 292쪽.

41) 최성경, “캐나다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2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225쪽 이하에 의하면, 캐나다는 각 주마다 인구동태통계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고 하면서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캐나다의 출생등록제도 는 이러한 사용례를 인용한다.

42) 최성경, 위의 논문, 241쪽.

43) 최성경, 위의 논문, 254쪽.

이후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대다수의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 상에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에서 보듯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연결되어 원활히 운용되고 있다. 다만 출산참여 병원에서의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산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의 출생사실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통보는 되지만 출생등록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범적 운영을 확대하여 ‘출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경우 캐나다의 입법례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의 출생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와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 의무 등 이원적 체계로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 병원 등 시설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란을 생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출생아동을 입양, 유기할 목적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익명출산제도⁴⁴⁾ 혹은 독일의 신뢰출산제도⁴⁵⁾ 등은 출산신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 본인의 확인

2.1 사망사실의 증명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아닌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자를 확대하고

44) 현소혜,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사회정책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14, 142쪽 이하;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54집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18쪽 이하.

45)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9. 5. 176-177쪽; 한명진, 앞의 논문, 283쪽 이하; 한정숙,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75쪽 이하.

있다(동법 제85조 제2항). 핵가족화 내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⁴⁶⁾ 특히 노인의 사망신고는 노인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비용수급 등의 문제와 맞물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신고함으로써 사회복지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엄격하게 사망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신고인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의3은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으로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이러한 유형의 서면으로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그 예이다.⁴⁷⁾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이러한 서면으로 대법원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진단서 및 검안서가 없는 경우에 첨부할 수 있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②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이 구체적으로 사망사유를 기재한 사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사망자의 검안서나 객관적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인우인(隣友人)의 보증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인우보증에 의한 사망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46)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전문가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7. 146쪽.

4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1호(2018. 5. 8. 시행)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2.2 인우보증제도의 폐지와 대안의 모색

인우보증(隣友保證)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친지·이웃 등 주변 사람이 특정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문서를 첨부하여 증인을 서주거나 확인해 주는 것이다.⁴⁸⁾ 가족관계등록법상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집에서 출산하거나 사망했을 때 신고를 쉽게 하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하였다.⁴⁹⁾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전신인 1960년 제정된 호적법 제87조 제3항에서 사망신고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호적예규에서 인우보증서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한 것에서 유래한다.

인우보증서는 농경사회에서 병원시설 등이 열악하던 시절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신속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로 신분등록제의 충실한 기능에 일익을 담당했다. 경제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오늘날 인우보증제도를 통한 출생이나 사망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출생신고에 있어서 인우보증제도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폐지되었고(IV. 1. 1.1 참조), 사망신고에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우보증을 통한 허위사망신고는 수배 및 전과 등 개인과 관련된 전산기록이 삭제돼 ‘신분세탁’까지 가능하다.⁵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인우보증서는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에 비해 공신력이 떨어지므로 신분등록공무원은 사망신고 수리시 철저한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사망의 실체적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신분등록 담당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사망이라는 진실의 증명력 판단에 차이가 있어 사무처리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외국의 선진 입법례에서도 우리와 같은 인우보증제도에 의한 신분등록을 인정하는 국가는 과거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출생 및 사망의 등록업무는 각 주정부의 독자적 업무영역이나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인구동태통계에

48) 박광동, “가족관계 관련 증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18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189쪽.

49) 김민지,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 160쪽.

50) 노컷뉴스, “너무 쉬운 ‘사망신고’…밥만 먹으면 범죄 악용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309378>>, 검색일: 2020.5.19.

대한 모델법규에⁵¹⁾ 준한다. 이에 의하면 주에서 발생한 사망이 5일 이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연신고의 경우 사망 당시의 의사 또는 검시관, 장례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의학증명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학증명서가 거절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사망의 등록이 이루어진다.⁵²⁾ 일본은 사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객관적 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제도가 아닌 시·정·촌의 장이 사전에 관할 법무국의 장에게 지시를 받아 수리하도록 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고의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⁵³⁾

인우보증제도가 제도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우보증서의 증명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제도의 운용에 있어 인우보증인의 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없다. 다만, 인우보증인의 허위와 가공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우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증명력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⁵⁴⁾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신분등록에 기여하였던 인우보증제도는 인권이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하고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⁵⁵⁾

2.3 사망통지제도의 도입 가능성

현대인의 대다수는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의 보호 하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2020. 2. 26. 보도자료에 의하면⁵⁶⁾ 사망장소별 사망자 수 구성비는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77.1%, 주택 13.8%, 기타(사회복지시설, 산업장, 도로 등) 9.1%로,

51)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U.S.), The Model Vital Statistics Act and Model State Vital Statistics Regulations, 2011 Rev.

52)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U.S.), op. cit., S. 15. (k)

53) 자세한 것은, 김민지, 앞의 논문, 171쪽 이하.

54) 김민지, 위의 논문, 182쪽.

55) 같은 견해, 김민지, 위의 논문, 197쪽.

56)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0865&pageNo=5&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검색일: 2020.5.19.

의료기관 등에서 사망 구성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하여, 주택에서의 사망 구성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장소별 사망 구성비

(단위: 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기관	63.7	65.9	67.6	68.5	70.1	71.6	73.1	74.6	74.9	76.2	76.2	77.1
주택	22.4	20.1	20.3	19.8	18.8	17.7	16.5	15.6	15.3	14.4	14.3	13.8
기타	13.9	14.0	12.1	11.7	11.1	10.7	10.3	9.7	9.8	9.4	9.5	9.1

사망은 가정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랜 관습에 따라 3일 내지 5일의 장례기간을 거쳐 화장이나 매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나 검시서 등을 발급받아 매장이나 화장에 필요한 입증과 사망신고시 입증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다수의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 상에서 환자의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에서 보듯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용되고 있다. 즉 보험금 청구를 위한 목적이지만 환자의 사망사실은 이미 국가기관에 알려지고 있지만 사망의 등록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가 사망등록을 위한 사망통보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통지는 향후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시 사실확인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⁷⁾ 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통보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하고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면 ‘사망사실’의 증명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7) 이 경우 사망통지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 본인의 확인

3.1 혼인신고의 유형과 심사

3.1.1 창설적 혼인신고

혼인은 독신인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모든 혈연관계와 인척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은 오랜 동안 결혼식이라는 사실혼에 바탕을 두었고⁵⁸⁾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서 “혼인은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로 규정한 이래로⁵⁹⁾ 우리 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신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⁶⁰⁾ 우리사회에서 결혼식은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킨다는 의미가 강할 뿐,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계약이라는 인식이 약한 편이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혼인신고제도는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므로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도 수리되는 구조이다. 결혼식을 거행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들을 정당한 부부로 당연히 하므로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허위의 혼인신고가 행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우리 국민인 일방이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국적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에 의해 외국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하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⁶¹⁾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의 배우자가 될 외국인이 중국여성 혹은 베트남여성 등으로 편중되자 ‘국제혼인사 무지침’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될 외국인이 중국인인 경우에는

5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은, “1923. 7. 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59) 이에 따라 이제까지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한 조선민사령의 원칙을 변경하여 1922. 12. 18. 제정한 조선호적령이 신고혼주의를 채택하였다.

6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4349 판결에 의하면, “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호)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바 없다면 망인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61) 다만 그 외국인이 미국의 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그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될 외국인이 베트남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의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대신 그의 베트남 최후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상황확인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 혼인요건인증서 및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1호).

3.1.2 보고적 혼인신고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혼인신고가 모두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민(재외국민 포함)인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 또는 혼인거행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본문).⁶²⁾ 이 경우 이들은 이미 현지에서의 혼인신고로 법률적인 부부가 되었으므로⁶³⁾ 우리나라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⁶⁴⁾

3.1.3 혼인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은 혼인신고 수리시 형식적인 심사기관 가지고 있어 혼인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혼인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분쟁으로 국가재정과 인력이 낭비되거나 개인적으로도 부당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62)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인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 제1항).

6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등에 의하면, 이 경우 다시 우리나라에서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6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3.2 혼인신고의 운영실태

3.2.1 일방적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혼인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대신 제출해 줄 것을 위임할 수도,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혼인 당사자들이 직접 혼인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혼인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타방의 사자(使者)로서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2007. 5. 17.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2조에서는 ‘신고’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2. 10 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 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의 강화로 종래 혼인신고시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40%대에 이르던 것이 2016년에는 24.74%까지 낮아졌으나,⁶⁵⁾ 여전히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인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일방적 혼인신고가 문제되었던 사례가 많다.⁶⁶⁾ 배우자 일방의 혼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폐해는 가장혼인의 증가이다. 가장혼인은 혼인의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서 제출로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에서 가장혼인이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⁶⁷⁾

3.2.2 증인제도

1960년 제정민법은 간편한 신고혼주의의 진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2인이 연서한 혼인신고서에 의하도록 하였고(민법 제812조 제2항),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 과정에서 증인은 혼인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65) 전원열/현소혜, 혼인신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7-08, 2017. 4, 46-47쪽 참조. 위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총 혼인건수 325,411건 중 146,373건(44.98%)에 달했던 배우자 일방에 의한 신고가 2016년에는 288,200건 중 71,312건(24.74%)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6) 자세한 것은 위의 전원열/현소혜, 위의 논문, 47-59쪽 참조.

6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등.

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만 있으면 혼인신고에 증인이 동행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등록실무상 증인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공의 인물을 증인으로 기재하여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증인을 통한 혼인의사의 확인이라는 제도적 취지의 실현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증인제도가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자칫 혼인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신속한 혼인신고를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3.2.3 형식적인 혼인신고에 대한 반성

혼인은 모든 혈연관계와 인척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나 사회 혹은 국가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혼인이 법률행위인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도 명확히 한다면 혼인신고 등 절차는 부부관계의 창설을 외형적으로 확정짓는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하게 될 것⁶⁸⁾이므로 혼인신고에 있어서 본인확인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3.3 혼인신고에 있어서 본인의 보호방안

3.3.1 진정한 혼인의사 확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

현행의 혼인신고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 선다면 혼인당사자의 진정한 혼인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혼인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위임장이 없어도 본인 도장(인감도장 불요) 및 신분증 원본이 있으면 혼인신고가 가능(일방당사자가 뇌사의 경우에도 혼인신고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진정한 혼인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일방당사자의 혼인신고의 경우에 당사자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인감제도를 준용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68)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이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신분관계를 새롭게 창설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일관되게 취하는 관점과 정확히 같게 된다. 양창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가족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3. 94쪽 참조.

에 대하여는 혼인신고가 너무 경직되고, 혼인당사자의 시간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인감증명사무의 감축이 목표인 정부의 시책에도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혼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등의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혼인신고만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 국민들의 법의식 또는 비용이나 시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혼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혼인등록시 혼인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가칭 ‘혼인기관’ 대표가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쌍방이 혼인에 동의한다는 선언을 하면 혼인기관 대표가 혼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과연 혼인기관 대표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 혼인기관 대표의 확인사항을 어떻게 행정청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이 문제된다. 넷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확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혼인신고용이라고 적시하여 제출받음으로서, 본인확인을 구현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혼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⁶⁹⁾이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적 불편함 및 혼인에 대한 안내의 범위 설정, 안내 방법 및 안내 수령이 안 된 경우 법적·행정적 문제 등에 대해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혼인신고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되었던 안은,⁷⁰⁾ 관습에 의한 혼인식 이후 2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거행지의 시·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민법 제812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안이 있었다. 또 혼인신고에 있어서 성년자 2인의 자격을 주례와 공인전문가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혼인식에 관여한 주례와 공인전문가가 혼인신고서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공인전문가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자는 것이다. 혼인식과 혼인신고를 일원화할 수 있지만, 공인전문가라는 새로운 전문직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혼인신고에 있어서 본인확인 문제 발생 여지는 없다.

6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2016. 1. 5.

70) 이화숙, 앞의 책, 150-151쪽 참조.

3.3.2 외국의 입법례

3.3.2.1 미국

미국의 혼인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혼인은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두 당사자가 주례자격을 갖춘 주례자 및 증인과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혼인의식을 거행하여야 한다는 점⁷¹⁾과 혼인절차가 거의 모든 주에서 비슷하다.⁷²⁾ 대개 혼인주례자에 의한 혼인이나 예식장(Wedding Chapel)을 이용하여 혼인을 한다.⁷³⁾

3.3.2.1.1 혼인주례자에 의한 혼인

우선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을 발급 받아야 한다. 결혼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신분증(예: 여권, 운전면허증, 군대 ID, 그린카드)과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이혼 경력이 있다면 이혼증명서 (Divorce Decree) 등을 구비한 후, 증인 1명 이상을 동행하여 신랑이나 신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주거지 Clerk's Office를 찾아가서 결혼허가증을 신청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허가 신청을 하려면 양 당사자가 카운티서기(County Clerk) 사무실에 직접 출두하여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효한 사진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주 발급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등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일부 카운티는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⁷⁴⁾ 이 결혼허가증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효한 신원증명서(사진이 있고 연령 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여권 및 외국인 거주 카드)를 지참하고 반드시 함께 방문하여 결혼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⁷⁵⁾

71) California Family Code, Section 420 (a)

72)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개결혼(public marriage)과 기밀결혼(confidential marriage)을 인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개결혼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참고로 기밀결혼 허가는 공개결혼 면허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나 공공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501조는 카운티 사무원이 기밀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하고 동법 제511항은 이 허가가 법원 명령을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밀결혼 허가를 신청하려면 부부가 함께 살 것을 맹세해야하지만 부부는 증거를 제공 할 필요가 없으며 동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기밀결혼은 사적인 것이므로 결혼허가증에 서명하기 위해 증인이 참석할 필요도 없다. 기밀결혼 허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가능하다. 2012년에 발행 된 캘리포니아 결혼허가 중 약 5분의 1이 기밀결혼이라고 한다. Mental Floss, "What Is a Confidential Marriage License and Why Does California Offer Them?", <<http://mentalfloss.com/article/70252/what-confidential-marriage-license-and-why-does-california-offer-them>>, 검색일: 2017.1.30.

73) 아래 내용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한 미국인과 재미교포들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였음.

74) Office of the County Clerk(San Francisco), "Marriage : General Information", <<http://www.cdph.ca.gov/certlic/birthdeathmar/Pages/MarriageLicenseInformation.aspx>>, 검색일: 2020.7.7.

대부분의 주에서는 결혼허가증 신청 혹은 발급 전후로 1~5일 정도 대기기간(평일 기준)이 경과되어야 카운티 서기가 결혼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일종의 숙려기간이라 할 수 있다.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는 결혼의 심각성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목적과 선부른 결혼결정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⁷⁶⁾ 결혼허가증 발급 후 정해진 기간 내에(보통 30일 이내이지만,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⁷⁷⁾ 혼인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혼인식’의 의미는 자격(License)을 가진 주례자 앞에서 부부로서의 서약을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계 지도자가 혼인의식을 진행하지만, 특정한 신앙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서 보통 은퇴한 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액(\$25~\$50)의 비용부담으로 혼인의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⁷⁸⁾ 혼인식에는 결혼당사자 이외에 2인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⁷⁹⁾ 혼인식은 혼인서약을 한 후, 혼인식을 집전한 주례자와 신랑과 신부 그리고 증인 2인이 결혼허가증의 정해진 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 후 주례자 혹은 결혼당사자는 그 결혼허가증(결혼허가증은 서약 후 결혼증명서로 변경됨)을 관할 카운티에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혹은 직접 접수해야 한다.⁸⁰⁾ 결혼허가증이 카운티에 접수된 후 며칠 뒤 결혼증명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직접 수령도 가능함). 이때 결혼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면 신청하라는 안내도 받게 된다. 대개의 경우 결혼증명서 사본(certified copy of marriage certificate) 신청을 1~2장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75)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록사무소 홈페이지(Pick Up Your Marriage License, <<http://www.lavote.net/home/county-clerk/marriage-licenses-ceremonies/apply-for-a-marriage-license/pick-up-your-marriage-license>>, 검색일: 2016.9.20.

76)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숙려기간이 면제되기도 한다. 이화숙, 앞의 책, 131쪽 참조.

77) 캘리포니아주 결혼허가서의 유효기간은 90일이고, 이 기간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78) California Family Code Section 400-Section 402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식적으로 혼인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주례자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79) Office of the County Clerk(San Francisco), “Marriage : General Information”, <<http://www.cdph.ca.gov/certlic/birthdeathmar/Pages/MarriageLicenseInformation.aspx>>, 검색일: 2020.7.7.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허가증에 한 사람의 증인이 서명하면 된다.

80)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의하면, 혼인주례자에 의한 혼인에는 혼인주례자가 신고당사자이고(제103150조), 뒤에서 보게 될 예식장을 이용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 또는 증인이 신고당사자가 된다(제103180)고 한다.

3.3.2.1.2 예식장(Wedding Chapel)을 이용하는 혼인

예식장을 이용하는 혼인은, 미리 결혼허가증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주례, 카운티 접수, 그리고 결혼증빙서류 신청까지 대행해준다. 예식장은 혼인식을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곳이다. 흔히 이러한 방법은 네바다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네바다 주에서는 24시간 예식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을 뿐 거의 모든 주에서 가능한 방법이다.

3.3.2.2 독일

독일신분등록법(PStG)은 제3장(제11조~제16조)에서 혼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혼인 당사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 또는 통상적인 거소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청(Standesamt)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예정된 혼인을 신고하여야 한다(PStG 제12조 제1항).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혼인당사자들이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가족관계등록사무소(Standesamt)를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자의 신분증, 각자의 주거등록확인서, 각자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제공한 혼인 관련 질문서, 국적 등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면으로 증명 하여야 한다(PStG 제12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청은 혼인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혼인가능 증명서, Ehefähigkeitszeugnis)의 제출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한다(PStG 제12조 제3항).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청은 당사자들이 사실관계의 설명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무효 원인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선서에 갈음한 진술서(Versicherung an Eides statt)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StG 제13조 제2항).

혼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는 2인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결혼과 동시에 서면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에는 혼인등기부(Eheregister)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부, 증인 및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은 이 서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PStG 제14조 제3항).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혼인 당사자들에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법적인 부부로서 구속된다는 것과 혼인이 등록된다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선언한다.⁸¹⁾ 혼인의 성립과 함께 혼인등기부에는, 혼인을 한 날 및 그 장소, 부부의 이름 및 성(姓), 각각의 출생지 및 출생일자, 성별 및 부부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법상의 사단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혼인 후에 사용할 이름 및 부부의 성(姓)

81) Firsching/Graba, *Familienrecht*, 6 Auflage, Verlag C.H.Beck, 1998, S.20ff.

등이 기재된다(PStG 제15조).

3.3.2.3 일본

일본에서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인 증인 2인이상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하든지 또는 이들이 모두 신고장소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일본민법 제739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호적법 제29조 제4호에서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소, 호적의 표시 및 신고인의 자격 “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서 혼인당사자 이외에 타인이 신고인이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혼인 당사자 2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각자 자필로 기입하고 서명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법률상의 혼인한 날이 된다.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본인의 소재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한다(호적법 제25조 제1항).

3.3.2.4 중국

혼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의 양당사자들이 혼인등기기관⁸²⁾에 출석하여야 하며, 혼인등기를 제 때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등기를 하여야 한다(혼인등기조례 제8조). 대리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⁸³⁾ 혼인등기기관은 혼인등기를 하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서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관련된 정황을 탐문해야 한다(동 조례 제7조 전단). 당사자들의 혼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혼인등기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동 조례 제7조 후단). 혼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이나 호구부, 본인의 생년월일과 혼인상황(미혼, 이혼, 사별)을 기재한 소속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가 없음을 다짐한 자필서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⁸⁴⁾

3.3.2.5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결혼은 이성간의 결혼과 동성결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⁸⁵⁾ 따라

82) 내지 주민의 혼인등기를 처리하는 기관은 현급인민정부 민정부서 혹은 향(진)인민정부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주민편의원칙에 따라 농촌주민이 혼인등기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기관을 확정할 수 있다(중국 ‘혼인등기조례’ 제2조).

83) 전원열/현소혜, 앞의 보고서, 121쪽.

84) 법원공무원교육원, 국제가족관계등록실무, 2015, 181쪽.

85) 뉴질랜드정부, Getting married, <<https://www.govt.nz/browse/family-and-whanau/getting-married/find-a-marriage-ce>

서 결혼하는 사람은 이성간의 결혼인지 동성결혼인지 선택할 수 있다. 결혼식은 주례자(celebrant)⁸⁶⁾에 의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등록사무소에서 결혼등록관에 의한 결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결혼은 등록된 주례자만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결혼허가(marriage licence)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결혼주례자를 섭외하여야 한다. 결혼등록사무소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등록관(Registrar of Marriage)이 결혼식을 진행하므로 따로 주례자(celebrant)를 섭외할 필요가 없다. 결혼등록사무소에서⁸⁷⁾ 결혼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 시까지)에 표준서약서에 의하여 약10분 정도에 걸쳐 진행된다.⁸⁸⁾ 결혼식에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결혼허가 없이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는 결혼하기 전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전에 결혼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례자에 의한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허가를 신청할 때 주례자의 성명과 결혼장소 및 대략적인 결혼날짜가 필요하다. 이 경우 결혼당사자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결혼 3일 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결혼 이전에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혼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알려야 한다.

결혼 당사자는 이 결혼이 합법적이며 진실한 결혼허가증에 의해, 16-17세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주례자나 결혼등록사무소의 담당자 면전에서 결혼등록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결혼등록은 이렇게 작성된 결혼등록신청서에 의해 주례자나 결혼등록사무소가 해 준다. 결혼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결혼을 한 후, 성(last name)을 변경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없다.⁸⁹⁾ 또 결혼으로 성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성(last name)을 사용하려면 특별한 절차 없이 종전 성(last name)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3.3.2.6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주)

결혼 당사자는 공식 출생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보여

lebrant/>, 검색일: 2017.1.28.

86) Wikipedia, "Celebrant", <<https://en.wikipedia.org/wiki/Celebrant>>, 검색일: 2017.1.20.에 의하면, 'a legally authorised conductor of weddings' 이라 하여 주례자라 번역하였다.

87) 뉴질랜드의 결혼등록사무소는 대부분 지방법원 등과 동일한 건물에 있다고 한다.

88) Ibid, 결혼비용은 결혼등록사무소에서 하는 경우, 결혼 전 결혼허가증 취득비용을 포함하여 뉴질랜드달러 \$ 173.70가 소요된다고 한다.

89) 그러나 은행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는 결혼증명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는 현재 호주 또는 외국 여권, 출생증명서 사본을 얻을 수 없거나 현재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법정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정진술서에는 공식 출생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 본인이 태어난 곳(국가, 주 및 도시), 본인의 생년월일, 모친의 결혼 전 성명을 포함하여 부모의 성명, 제공된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인번역인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⁹⁰⁾

빅토리아주 혹은 다른 호주의 주에서 결혼하려면 결혼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해 결혼예정통지(Notice of Intention to Marry ‘NOIM’) 서식⁹¹⁾을 작성하여 결혼주례자나 목사 또는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결혼예정통지(NOIM)는 결혼식 예정날짜보다 최소한 1개월 전부터 18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⁹²⁾ 이 기간보다 단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⁹³⁾

결혼은 등록 된 민간 결혼주례자, 독립적 종교의 등록된 결혼주례자, 교회에 속한 사제 주례자 등이 수행할 수 있다.⁹⁴⁾ 결혼식에는 18세 이상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은 결혼예식에 참석하여 증인임을 확인하고 결혼등록신청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결혼식은 영어로 진행되므로 신랑이나 신부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 통역은 가족이 할 수 없고, 결혼식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또 증인은 호주시민일 필요는 없지만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증인에게 신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혼식 당일 결혼당사자는 결혼식을 치렀다는 증명서(part certificate)를 받게 된다. 이 인증서는 단지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할 뿐 운전면허증

90) State of Victoria (Australia), Book your wedding ceremony, <<https://www.bdm.vic.gov.au/victorian-marriage-registry/book-your-wedding-ceremony>>, 검색일: 2020.7.7.

91) NOTICE OF INTENDED MARRIAGE, <<https://www.ag.gov.au/sites/default/files/2020-03/New-notice-of-intended-marriage.pdf>>, 검색일: 2020.7.7.

92) State of Victoria (Australia), Book your wedding ceremony, <<https://www.bdm.vic.gov.au/victorian-marriage-registry/book-your-wedding-ceremony>>, 검색일: 2020.7.7.에 의하면, 특히 여름성수기에는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93) State of Victoria (Australia), Lodge a Notice of Intended Marriage (NOIM), <<https://www.bdm.vic.gov.au/marriages-and-relationships/lodge-a-notice-of-intended-marriage-noim>>, 검색일: 2020.7.7. 예외적 인정을 위해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등록소’(BDM), 법원 등에서 법정통지기간의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regulation 39에서는, 늦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허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Schedule 1B에 ‘고용관련 또는 기타 여행계획’ ‘의학적 이유’ 등 5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다.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0c00515/html/text#param153>> 참조. 검색일: 2020.7.7.

94) Queensland정부, Becoming a marriage celebrant, <<https://www.qld.gov.au/law/births-deaths-marriages-and-divorces/marriage-weddings-and-civil-partnerships/becoming-a-marriage-celebrant/>>, 검색일: 2017.1.20.

등과 같이 공식적인 목적을 위한 증명력은 없다. 공식결혼증명서가 필요하면 표준결혼증명서(standard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당사자들은 결혼식 후 언제든지 표준결혼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결혼등록이 되면 결혼등록소는 표준결혼증명서만 발행할 수 있다. 결혼주례자는 결혼예식 후 14일 이내에 결혼등록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결혼등록을 확실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3.3 혼인당사자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 도입

여러 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안은 혼인당사자 쌍방이 모두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혼인 당사자들은 직접 출석으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가족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혼인신고는 일생에 걸쳐 1~2회 등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에 반하는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러한 불편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인당사자 쌍방 출석에 의한 혼인신고로 혼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혼인당사자 쌍방이 출석에 의한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질병이나 사실상 거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 중인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외국국적의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국제결혼 등에는 별도의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혼인신고에 있어서 혼인의 증명력을 담보할 수 없는 증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당사자 쌍방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출석을 대신하여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도록 제안한다.

쌍방출석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⁹⁵⁾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전염성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격리입원 중인 경우,⁹⁶⁾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 시설 등에 입원 중인 경우,⁹⁷⁾ 구치소·교도소 및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군 복무중인 경우, 의사의 확인에 의해 노령·질병·장애·기타 사유로 인해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국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시

95) 전원열/현소혜, 앞의 보고서, 152-156쪽 참조.

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97) 정신보건법 제24조-제26조 참조.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혼인의사를 누가 확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제36조 제1항)의 입장에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출장신고 수리가⁹⁸⁾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모든 신분관계가 개인별로 등록되어 이를 공시·공증하는 정보의 집합으로서 등록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인구 등 관련 통계산출의 기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운영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등록은 대부분 신고적격자에 의한 신고에 의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는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가 있지만 모든 신고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현실생활과 일치시키고자 한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제적으로 신고적격자의 본인확인 내지 본인의사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는 신고인 등의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⁹⁹⁾ 이 연구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인확인 수단으로 본인확인이 비교적 분명한 것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인서명서는 그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신분증명서는 사건 본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확인도구가 될 수 있으나, 불출석 사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출석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가 복제, 도난 내지 위·변조되어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의 논의에 있어,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불출석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98) 다만 호정사무소 혼인신고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직접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혼인당사자는 거주지 및 소재지 호정사무소에 혼인신고 예약기일을 지정·신청하면 해당 호정사무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호적담당자를 파견하여 혼인당사자의 혼인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9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 시행 2015.2.1.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이러한 사실을 사건본인 이외의 자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우편이나 SNS 등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의 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각종의 가족관계신고에 있어서는 개선방안으로는,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출생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와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란을 생략하고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쌍방출석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전염성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격리입원 중인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중인 경우, 구치소·교도소 및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군 복무중인 경우, 의사의 확인에 의해 노령·질병·장애·기타 사유로 인해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국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불출석 혼인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의 혼인의사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출장신고 수리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렇게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로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연구 (II): 출생등록 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법원공무원교육원, 국제가족관계등록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15.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I], 2012.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신영호,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 2009.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6.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3.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세창출판사, 2012.

전원열/현소혜, 혼인신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7-08, 2017. 4.

한복룡 역, 전환기의 가족법(Mary Ann Glendon,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길안사, 1996.

현소혜,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사회정책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4.

Firsching/Graba, *Familienrecht*, 6 Auflage, Verlag C.H.Beck, 1998.

John H. Crabb, *The French Civil Code, English Revised Edition*(as amended to 1 July 1994), Fred B. Rothman & Co. 1995.

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 *Birth registration and birth certificates: consultation paper*, 2012. 9.

2. 학술지

김민지, “출생 및 사망신고에서의 인우보증제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8권 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 157-204쪽.

-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 54집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15-341쪽.
- 문흥안,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0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4, 301-335쪽.
- _____, “호적의 기능과 사생활비밀의 보호”, 현대민법의 전개(서영배박사화갑기념논문집),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577-599쪽.
- _____, “호적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제8호, 한국가족법학회, 1994.12, 483-529쪽.
- 박광동, “가족관계 관련 증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18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8, 187-208쪽.
-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법학 제27호, 연세법학회, 2016.6, 39-65쪽.
-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족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11, 481-496쪽.
-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전문가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7, 113-156쪽.
- 양창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가족법연구 제19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3, 71-103쪽.
- 최성경,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9. 5, 161-194쪽.
- _____, “캐나다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2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215-258쪽.
- 한명진,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283-304쪽.
- 한정숙, “독일의 비밀출산서비스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5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71-81쪽.

3. 기타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검색일: 2020.5.22.
- 뉴욕 건강부 홈페이지(Death Certificates), <https://www.health.ny.gov/vital_records/death.htm>,

검색일: 2016.11.14.

미국 로스앤젤리스 등록사무소 홈페이지(Pick Up Your Marriage License), <<http://www.lavote.net/home/county-clerk/marriage-licenses-ceremonies/apply-for-a-marriage-license/pick-up-your-marriage-license>>, 검색일: 2016.9.20.

_____(Information on Obtaining a Copy of a Birth Record), <<http://www.lavote.net/home/records/birth-records/birth-records-request/who-can-obtain-a-copy-of-a-birth-record>>, 검색일: 2020.7.7.

서울신문, (정부3.0 생활형 서비스 (상)) 혼인신고 댄 전입 · 주소지변경 ‘원스톱 해결’ 2016.10.11.자 기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2011014#csidxd4c79ba9eaaae61a09f9166e1520869>>, 검색일: 2016.11.14.

통계청, “2019년 출생 · 사망 통계(잠정)”,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0865>, 검색일: 2020.2.26.

정부24,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확대 안내, <<https://www.gov.kr/portal/ntcltm/54619>>, 검색일: 2020.5.19.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검색일: 2020.5.19.

State of Victoria(Australia), Book your wedding ceremony, <<https://www.bdm.vic.gov.au/victorian-marriage-registry/book-your-wedding-ceremony>>, 검색일: 2020.7.7.

_____, Lodge a Notice of Intended Marriage (NOIM), <<https://www.bdm.vic.gov.au/marriages-and-relationships/lodge-a-notice-of-intended-marriage-noim>>, 검색일: 2020.7.7.

NOTICE OF INTENDED MARRIAGE, <<https://www.ag.gov.au/sites/default/files/2020-03/Nw-notice-of-intended-marriage.pdf>>, 검색일: 2020.7.7.

Office of the County Clerk(San Francisco), “Marriage : General Information”, <<https://sfgov.org/countyclerk/marriage-general-information>>, 검색일: 2020.7.7.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0c00515/html/text#param153>>, 검색일: 2020.7.7.

California Code, Health and Safety Code – HSC, <<http://codes.findlaw.com/ca/health-and-safety-code/>>, 검색일: 2020.7.7.

Wikipedia, “Celebrant”, <<https://en.wikipedia.org/wiki/Celebrant>>, 검색일: 2020.7.7.

Australia.gov.au, 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ies, <<http://www.australia.gov.au/informat>

ion-and-services/family-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registries>, 검색
일: 2020.7.7.

ACT(Canberra), <https://www.accesscanberra.act.gov.au/app/answers/detail/a_id/1693#!tabs-2>,
검색일: 2020.7.7.

[Abstract]

Improvement of ‘Identification’ System i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Moon, Heung-Ahn**

Most records of the Family Register are recorded by a report submitted by the applicant as prescribed in the law, and by acceptance of a registration officer. This process bears a limitation that the registration officials cannot verify the existence or authenticity of the reported parties. This paper proposes specific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underlying in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It starts by examining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current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under Section II.

In Section III. it identifies the need of a way to increase the proof of ‘fact’ in birth or death registration for reporting purpos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genuine confirmation of the case owner for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It is proposed to notify such facts by mail or SNS so that anyone other than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could not know the contents, and suggested to mark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in the appropriate margin of the report in case the report was submitted by on behalf.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arly detection of errors in birth reporting as much as it gives the unattended case owner an opportunity to confirm, while serving as a verification system that detects errors in the family registration in the early stage.

In Section IV. it explore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registrations of birth, death and marriage;

1. As for the birth reports, a plan was devised to expand the online birth reports that is currently being piloted. This could benefit from the computerized system of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at are already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7

** Professor, School of Law, Konkuk University

connected for insurance claim purpose. There also seems to be no particular issue with the connection betwee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the Supreme Court’s family registration system. The only requirement is to have the law revised so that notification of the fact of birth of a medical institution can qualify as birth notification for an official registration. Accurate registration of birth would be possible by clearly specifying the obligation of birth notification by an obligor of registration and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he case of childbirth outside of the hospitals and other facilities, the birth report can be filed with the documents that can prove the fact of birth as current process. For the mothers who want to hide the birth, the oath of the entry field of the child’s father could be omitted in the birth notice issued by a medical institution, and recorded in the birth report instead.

2. In the case of death notification, the problem is from a report by an acquaintance without a death certificate or an objective document of the same level that can prove the death. Enabling death report by an acquaintance contributed to the reporter’s convenience and prompt death registration, but it does not satisfy the proof of death. In case a death report is filed without an objective document at the same level as the death certificate or an autopsy report, it is proposed that the head of the city or district of the family registration office to request the family registration supervisory court an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facts before accepting the death report. In parallel, revision of the current Family Registration Law is proposed to mandate the notification of deaths by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recording the deaths already known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r the official registration, and to enable such information to qualify as valid death notification. The deaths repor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also be validated and used for an official record in connection with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network.

3. With regards to the marriage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formal marriage reporting system to make it clear that marriage is a legal contract, and to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arriage. It is deemed necessary to oblige both parties to the marriage to attend in person for reporting the marriage, and to stipulate the exceptional cases where attendance by both parties is impossible. Since the marriage registration by attendance of

both parties is clear enough to know the intend of the marriage, it is suggested that the current witness system be abolished.

[Key Words] Identificati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Law, Birth Registration, Online Birth Registration, Notice of Birth, Death Registration, Notice of Death, Confirmation of Marriage Intention, Marriage Registration, Guarantee of the Neighborhood System, Certificate of Seal